
2024-25년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특수체육학과 내규

최종개정일
(2025.12.29.)



목 차

I. 특수체육학과 소개

- 1) 대학원 소개 p.2
- 2) 교수 소개 p.3

II. 특수체육학과 운영내규 p.5

III. 대학원 행정 정보

- 1) 입학/입시 p.8
- 2) 대학원 등록 및 학적 내규 p.8
- 3) 석·박사 통합과정 운영내규 p.9

I. 특수체육학과 소개

1) 대학원 소개



주임교수 김지태

안녕하십니까.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특수체육학과 주임교수 김지태입니다. 현실적으로 특수체육전공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학교(과정)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단국대학교 특수체육학과는 장애인에 관련된 다양한 현장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체육전공인 운동재활, 운동처방, 스포츠사회학, 운동심리학, 스포츠산업 교수들과의 융합을 실행함으로써 타 대학에 비해 보다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다양한 장애인체육 분야의 융합이 가능한 유일한 대학이 될 수 있습니다.

타 대학과의 차별성을 두기 위해 대한장애인체육회와 및 특수체육학회와의 연계성을 통해 장애 관련 다양한 연구를 시행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스포츠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통합교육을 실현하고, 장애 영역을 고려한 다양한 전문가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체육 관련 취창업분야에 보다 좋은 위치를 선점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특수체육학과에서는 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발급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심리운동 분야)과 연계된 장애인의 장애 유형과 건강 상태에 따른 안전하고 효과적인 신체활동을 적용하고 아울러 실천적 복지에 관한 지식과 직·간접적 경험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특수체육학과는 교수, 대학원생을 위해 여러분들을 존중하고 전문적인 분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 입니다.

2) 교수소개



- 김지태
 - 특수체육, 장애인스포츠
 - 노인체육 프로그램 및 지도법
 - 운동발달



- 윤인애
 - 스포츠 심리 및 심리코칭
 - 무용교육



- 강현욱
 - 산림치유, 산림레포츠 교육 및 프로그램
 - 여가 및 치료레크리에이션
 - 노인여가복지



- 신윤아
 - 운동생리학
 - 스포츠영양학



- 허진영
 - 골프선수 심리 상담
 - 운동학습의 발달



- 이윤수
 - 체육지도법, 체육교육
 - 교수 지식, 연수, 개념도



- 정태린
- 스포츠경영
- 스포츠 정책 및 법
- 스포츠 복지

II 특수체육학과 운영내규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단국대학교 창학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학원의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라 특수체육학과와 합리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정리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 (적용범위와 효력) 본 내규는 일반대학원 특수체육학과 석·박사과정 및 통합학위과정에 적용되며,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제2장 입학관리

제3조 (우수학생의 유치) 특수체육학과 소속 교수들은 특수체육학과 석·박사 및 통합 학위과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 학생의 모집에 적극 노력한다.

제3장 교육과정 및 교·강사 배정

제4조 (교육과정)

- 1) 박사과정의 경우, 매학기 취득 학점 중 2/3 이상을 자기 전공 분야에서 취득하여야 한다.
- 2) 석사과정의 경우, 매학기 모든 과목을 학과 과목으로 취득하여야 한다.

단, 지도교수의 허락을 득할시 타학과 수강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과목개설)

- 1) 심리운동 자격증을 위한 수업은 매학기 최소 2과목을 배정한다.
- 2) 과목의 개설은 화요일/토요일에 진행될 수 있게 한다.

제6조 (교·강사 배정)

- 1) 교강사 배정은 학과주임가 이전 5학기 동안 진행된 교과과정을 살펴보고 배정한다.
- 2) 심리운동 자격을 위한 수업의 배정은 '장애인스포츠문화연구소'에서 정한 강사로 배정한다.

제4장 논문지도

제7조 (지도교수의 선정) 지도교수의 선정은 원생의 제청에 따라서 이루어지며, 필히 지도교수의 서명을 먼저 받고, 주임교수가 서명하는 절차를 따른다. <개정 2023.05.30.>

제5장 자격시험

제8조 (종합학력시험 면제기준)

- 1) SCI, SSCI, SCIE급 학술지 논문게재(교신저자, 제 1저자 포함)시 종합학력시험을 면제한다.
- 2) 타 대학원에서 종합시험을 치루고 편입한 원생의 경우 종합학력시험을 면제한다.

제9조 (종합학력시험 출제와 채점)

- 1) 석사과정은 수강하였던 수업 교과목 중 2과목, 박사과정은 수강하였던 수업 교과목 중

4과목을 시행하며, 필기시험으로만 시행하며 지도교수의 과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단 특별한 경우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응시과목의 합격점수는 과목당 80점 이상으로 한다.

3) 종합학력시험의 채점은 해당 교과목을 출제한 교강사가 채점한다.

4) 불합격자는 다음 학기에 재시험을 실시한다.

제10조 (외국어시험 과목) 외국어자격시험의 과목과 면제기준은 일반대학원 학칙과 시행세칙에 준한다.

제6장 학위과정

제11조 (석사 및 박사학위 과정 선택) 대학원 특수체육학과에서는 석사 및 박사과정의 학위취득을 논문제출로만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제12조 (석사학위 과정의 변경) 학위취득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단, 석·박사 통합과정의 학위취득과정 변경은 사유서 첨부 후 주임교수의 승인을 득할 경우 3학기 말까지 대학원장의 승인하에 변경이 가능하다.

제7장 학위논문 심사 및 제출

제13조 (연구계획서 제출 및 심사) 논문제출로만 학위취득을 인정한다.

제14조 (예비발표 자격 인정) 석사과정은 3학기, 박사과정은 5학기, 석박사통합과정은 7학기 이후부터 예비 발표를 신청할 수 있다. 석사과정은 연구실적 기준점수 100점 이상, 박사과정은 연구실적 기준 발표기준점수 300점 이상, 석박사통합과정은 350점 이상을 취득해야 예비발표 신청이 가능하다. (단, 외국인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원생은 별도의 규정을 적용함 / 편입학생은 점수의 기준을 1/2로 적용함).

제15조 (업적평가) 연구업적 평가항목 및 기준은 별첨 1과 같다.

1. 연구실적을 평가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연구자의 기여율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정하되,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자리로 표시하며, 기여율은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로 계산한다.

가. 기여율 계산 방법

- 단독 : 1

- 공동연구(제1저자, 교신저자) : $\{1/(n+1)\} \times 2$

- 공동연구(참여) : $\{1/(n+1)\}$ - 본인포함 제1저자가 3인 이상 또는 본인포함 교신저자가 3인 이상: $\{1/(n+1)\}$

나. 위 1호에서의 n은 실연구자 수를 말하며, 전체 저자 수가 10인 이상일 경우 n은 10으로 산출한다. 다만, 저자 중 지도교수가 포함된 경우에 한해서 n은 전체 연구자 수에서 지도교수 1명을 뺀 실연구자 수를 말한다.

다. 연구자 수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전체연구자 수 : 연구에 참여하고 저자로 게재된 전체 연구진의 수

- 실연구자 수 : 연구에 게재된 저자 중 지도교수가 포함된 경우, 전체 연구자 수에서 지도교수 1명을 제외한 수를 말한다.

제16조 (논문심사위원) 석사과정은 내부교원 3명 또는 외부심사위원 1명과 내부교원 2명,

박사과정은 내부교원 3명, 외부심사위원 2명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 (논문심사 절차)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은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 발표와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동일 학기에 진행하지 않고, 필히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 발표를 한 다음 학기 이후에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 (논문대체 심사절차) 논문제출로만 학위취득을 인정한다.

제19조 (논문대체물 제출) 논문제출로만 학위취득을 인정한다. 제8장 학과 운영위원회

제20조 (의사결정 방식) 학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의사결정은 학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교수 1/3이상의 참석(위임 포함)과 참석 교수의 2/3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내규는 2024년도 03월 01일부터 적용한다.

[별첨 1] 연구업적 평가기준 (학술발표 최대 점수는 100점까지 인정함!)

[일반논문]

평가구분		인정기준	기준점수
국내 학술지	A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KCI 검증 완료 시 인정)	150
	B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학술지(KCI 검증 완료 시 인정)	100
	C	A, B 이외에 ISSN이 부여된 정기 학술지의 논문	50
	D	특수체육 및 특수교육 분야의 심도 있는 학술논문만을 묶어 편찬된 국내 전문학술도서 중의 한 개의 장	50
국제 학술지	A	국제저명학술지 *SCI 혹은 SSCI 전체 저널 중 IF 15이상, SCIE 전체 저널 중 IF 30이상(논문 게재년도 기준 지적 2년전 JCR값을 적용)	200
	B	A & HCI 등재학술지	600
	C	SCI, SSCI, SCIE 등재학술지	450
	D	SCOPUS 등재학술지(대학정보공시의 SCOPUS 정규논문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	200

[학술발표 및 저서]

평가구분	인정기준	기준점수
교내·외 학술발표	특수체육학과 자체 하계 학술세미나 및 전공세미나 1회당 ※ 세미나 자료만 제출하고 미발표시 점수 불인정 ※ 석사과정에 한해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이중 발표 가능하며, 박사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은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이중 발표 불가	50
	특수체육관련 국내 및 국제학술대회 1회당	50
* 재학기간 내에 자체 학술세미나 및 전공세미나는 반드시 1회 이상 참석		
* 최대 100점까지 가능		
● 만약, 기준을 채우지 못하고 졸업을 원할 경우, 1점에 대하여 1만원을 학교발전기금 또는 원우회 기부를 하여 점수를 채울수 있다.		

Ⅲ. 대학원 행정 정보

1) 입학/입시

-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입시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홈페이지(<https://grad.dankook.ac.kr/web/grad>) 참조

2) 대학원 등록 및 학적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학칙 제4장(등록, 휴학, 제적, 자퇴 및 복학), 수업연한, 재학연한 및 수료에 관한 세부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09.3.1. 개정)

제2조(등록)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은 정규등록과 연구등록으로 구분한다.

제3조(정규등록)

- ① 정규등록은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학생의 경우 4학기까지, 석·박사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학생의 경우 7학기까지의 등록을 말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계과정을 통한 석사학위과정 조기 수료자의 경우는 등록기간을 1개 학기 단축할 수 있다.
- ③ 수업연한을 경과하고도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계속하여 정규등록을 하여야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단, 수강신청 학점이 1~3학점까지는 정규수업료의 1/2을, 4학점 이상일 경우에는 정규수업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05.10.17. 개정)

제4조(연구등록)

- ① 연구등록은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을 수료한 자가 해당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연속하여 하는 등록을 말하며, 연구등록 학기는 대학원 학칙 제27조(재학연한)에 정한 기간 이내로 한다. 단, 연구등록이 10회를 경과한 이후 연구등록학기의 연구등록금은 납부하지 아니한다.(’07.4.23., ’09.3.1., ’11.3.1. 개정)
- ② 연구등록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하거나 해당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으나, 교과목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는 없다.
- ③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의 수료자가 연속하여 연구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 처리되며, 재입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등록한 학기에 대한 연구등록금과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금) 정규등록 및 연구등록 납입금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휴학 및 복학) 재학생의 휴학 및 복학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 제17조(휴학)와 제18조(복학)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연구휴학 및 복학)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을 수료한 자 중 연구등록 해당자의 휴학은 1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시기 및 절차는 이 내규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제적)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으로 처리된다.

1.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의 기일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매 학기초 정해진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3.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로 인해 면학분위기를 저해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제적으로 징계 처분된 자

제9조(재입학) 재입학과 관련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 제13조(재입학)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10조(수료의 요건)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에서 4학기 이상, 통합과정에서 7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마치고 대학원 학칙 제23조(취득학점)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09.3.1.개정)

제11조(수료자의 등록)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의 수료자는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이 내규 제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이 내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 및 동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 ① 이 내규는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내규의 연구등록에 관한 사항은 2004학년도 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05.10.17.)

제1조(적용) 이 변경 내규는 제3조(정규등록) ③항은 2006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5년 10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7.4.23.)

제1조(적용) 이 변경 내규는 제4조(연구등록) ①항은 2004학년도 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2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7년 4월 23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9.3.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3.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석·박사 통합과정 운영내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 대학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의 규정에의거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통합과정이란 박사학위 취득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 석사 학위취득 없이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 ① 통합과정은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모두 운영하고 있는 학과에서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통합과정은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이 통합된 단일 교과과정으로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입학정원) 통합과정의 입학정원은 매 학년도 박사과정 입학정원에 포함된다. 모집시기별 모집여부 및 선발인원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조(학위과정의 인정)

- ① 통합과정의 학생으로서 3개 학기 이상 이수하고, 전공 24학점을 이상을 취득한 학생은 박사과정으로 인정하며, 그 이전에는 석사과정으로 인정한다.
- ② 전향에도 불구하고, 연계과정을 이수하고 통합과정으로 진학한 학생이 2개 학기까지 전공 24학점을 취득한 경우 박사과정으로 인정한다.

제6조(중도 포기)

- ① 통합과정으로 입학하였으나 석사학위의 취득을 끝으로 학업을 마치고자 하여 통합과정의 학적을 포기하는 것을 중도 포기라 한다. 중도 포기를 원하는 학생은 ‘통합과정 중도포기 요청서’를 소속 학과 주임교수를 거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중도 포기자의 학적은 해당 연도 석사과정 입학정원의 여석 범위 내에서 석사과정으로변경할 수 있다. 단, 이후에 다시 통합과정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 ③ 중도 포기자로 인해 발생한 박사과정의 여석은 해당 연도 박사과정 여석 수에 합산한다.

제7조(석사학위 취득)

- ① 통합과정의 학생 또는 통합과정을 중도에 포기한 학생이 석사학위를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하고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1. 통합과정에 재학 중인 자로서 3개 학기 이상 등록 후 전공과목 24학점 이상 취득하고, 석사학위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학생은 석사학위논문을 제출 후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논문대체로 연구논문을 선택한 학생은 전공과목 3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2. 연계과정을 이수하고 통합과정으로 진학한 학생은 3개 학기 이상 등록에서 2개 학기 이상 등록으로 할 수 있다.
- ② 중도 포기자가 석사학위과정으로 학적을 변경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석사과정의 졸업으로 인정한다.

제8조(학위청구 자격시험 및 연구윤리)

- ① 통합과정의 학생이 학위청구를 하는 경우, 학칙 시행세칙 제13조(학위청구 자격시험), 제14조(외국어시험)와 제15조(종합학력시험 및 연구윤리이수)의 규정을 따른다. 단, 석사학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 중 석사학위과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따른다.
- ② 석사학위청구 이력이 있는 학생이 박사학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석사학위청구를 위하여 기 합격한 종합학력시험 과목 및 외국어시험과 기 이수한 연구윤리교육을 박사학위청구를 위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9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과 대학원 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부칙(2019.5.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9. 5.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제정 내규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내규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 특수체육학과 사무실 번호: 041-550-3810